

 금융위원회	<b>보도자료</b>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임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손주형(02-2100-2860)	담당자	윤혜원 사무관 (02-2100-2863)	

## 제 목 :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**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**
  - ①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·가공한 농수산물·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지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
  - ②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(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,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)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

### 1 개요

-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(이하, “농신보”) 보증대상을 확대\*하는 내용의 개정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이 '19.7.1. 시행 예정

\*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「농신보 제도개선방안」(18.4.10일 발표) 후속조치

#### <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(‘18.12.31.공포, ‘19.7.1.시행) 주요 개정내용 >

- ①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를 위해 농·어업인 준용규정을 「농협법」, 「수협법」에서 「농업·농촌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」으로 변경
- ② 농·어업인이 직접 생산·가공한 농수산물·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정의 확대
- ③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

-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이 '19.4.24일 국무회의 통과

## 2 시행령 주요 내용

### ①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

-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(농수산물가공품)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포함

▶ (현행) 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\*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

- \* (예) ①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자  
 ② 농업인이 생산한 고추를 사서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자  
 ③ 어업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사서 어육으로 가공하는 자

▶ (개정)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한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자\*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

- \* (예) ①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자  
 ② 농업인이 직접 고추를 재배한 후 만든 고춧가루를 사서 고추장으로 가공하는 자  
 ③ 어업인이 직접 생선을 잡아 가공한 어육을 사서 어묵으로 가공하는 자



### ②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

- 법률 개정으로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된 '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'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<sup>1)</sup>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사업자<sup>2)</sup>를 포함 \* (예) 체험농장, 팜스테이 등

- 1) 농촌융복합산업(농업과 2차(제조·가공)·3차(체험·관광) 산업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)을 경영하고자 「농촌융합산업법」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인증을 받은자
- 2)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(마을 자연환경·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체험·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숙박·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)을 운영하고자 「도농교류법」에 따라 시장·군수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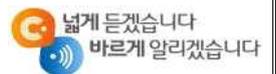
## 3 향후 일정

-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'19.7.1일부터 시행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